

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8863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2. 26.

발의자 : 김철민 · 이찬열 · 윤관석

김현권 · 이수혁 · 위성곤

이개호 · 신창현 · 윤영일

설훈 · 전현희 · 김정우

박홍근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가 소유·관리하는 철도시설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, 국가에 시설물을 무상 양도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경우 등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한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철도시설을 원상회복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철도시설과 유사한 국공유재산인 도로, 하천 등의 경우와 달리 점용허가 취소나 무단 점용 시 변상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국가의 주요 기반시설이자 국유재산으로서 공공성을 우선으로 하는 철도시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현행법에 철도시설에 대한 점용허가의 취소 및 점용허가 없이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철도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운영 여건을 조성하는

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42조의2, 제44조의2 및 제46조제1항).

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2조의2 및 제4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2조의2(점용허가의 취소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는 사업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게 된 경우
 2.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 3. 제44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
 4.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
- 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의 취소 절차,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제44조의2(변상금의 징수)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

할 수 있다. 이 경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 한다.

제46조제1항 본문 중 “점용을 폐지한 때”를 “점용을 폐지한 경우 또는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점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)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42조의2(점용허가의 취소) ①</u></p> <p><u>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1항</u> <u>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</u>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</u> <u>당하면 그 점용허가를 취소할</u> <u>수 있다.</u></p> <p><u>1.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</u> <u>설물의 종류와 경영하는 사업</u> <u>이 철도사업에 지장을 주게</u> <u>된 경우</u></p> <p><u>2. 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</u> <u>이내에 해당 점용허가의 목적</u> <u>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</u> <u>한 경우. 다만, 정당한 사유가</u> <u>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</u> <u>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</u> <u>수 있다.</u></p> <p><u>3. 제44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</u> <u>부하지 아니하는 경우</u></p> <p><u>4.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</u> <u>로 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</u> <u>는 경우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의</u></p>

<p><u><신 설></u></p> <p>제46조(원상회복의무) ①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<u>점용을 폐지한 때에는</u> 점용허가된 철도 재산을 원상(原狀)으로 회복하여야 한다. 다만, 국토교통부장관은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	<p><u>취소 절차,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제44조의2(변상금의 징수)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2조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도시설을 점용한 자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을 준용한다.</p> <p>제46조(원상회복의무) ① ----- ----- ----- <u>점용을 폐지한 경우 또는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----- ----- ---. ----- ----- ----- -----.</u>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---	--